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위성방송국 또는 지상파·위성방송보조국)

① 송신부	(1) 송신방식						
	(2) 장치구분						
	(3) 정격출력		(4) 실효복사전력				
	희망 또는 발사 가능한 전파 특성	(5) 전파형식		(6) 주파수		(7) 주파수범위	
		(8) 발진방식		(9) 변조방식		(10) 최고변조 주파수	
	(11) 주파수변환 방식						
	(12) 주파수편이 억제장치						
	(13) 안테나공급전력 저하장치						
	종단부 트랜지스터 (IC 또는 진공관)	(14) 명칭		(15) 개수		(16) 비고	
	스퓨리어스 발사 제거장치	(17) 방식		(18) 제거대상 주파수		(19) 삽입손실	
송신장치 제원	(20) 제조자명		(21) 형식 또는 명칭		(22) 일련번호 및 제조 연월일		
② 수신부 (주장치·예비장치)	(1) 전파형식 및 주파수범위		(2) 국부발진주파수와 중간주파수		(3) 중간주파증폭부 통과대역폭 (-6dB점)		
	(4) 제조자명		(5) 형식 또는 명칭		(6) 일련번호 및 제조 연월일		
③ 송신안테나계 등	안테나	(1) 형식 및 구성	(2) 편파면	(3) 이득(dB)	(4) 지상고(m)	(5) 해발고(m)	(6) 주목사각도 또는 판넬 방향
	(7) 전기적 틸트					(8) 방향별 틸트	
	급전선	(9) 종별	(10) 길이(m)	(11) 손실(dB)		(12) 기타	(13) 비고
(14) 전체 손실(dB)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④ 수 신안 테나 계	안테나	(1) 형식과 구 성	(2) 편파면	(3) 이득(dB)	(4) 지상고(m)	(5) 해발고(m)	(6) 지향각	
	급전선	(7) 종별		(8) 길이(m)	(9) 손실(dB)		(10) 기타	
⑤ 연 주장 치	(1) 종류		(2) 상용(대수)	(3) 예비(대수)	(4) 형식 또는 명칭		(5) 비고	
⑥ 조 정장 치	(1) 종류		(2) 상용(대수)	(3) 예비(대수)	(4) 형식 또는 명칭		(5) 비고	
⑦ 전 원설 비	구분	(1) 종류	(2) 용량	(3) 전압	(4) 상수	(5) 비고		
	연주소							
	송신소							
⑧ 접 지방 식	(1) 송신기				(2) 접지저항			
	(3) 안테나				(4) 접지저항			
	(5) 기타							
⑨ 안 테나 설치 대 및 급전 선주	구분	(1) 종류	(2) 높이	(3) 기부 지상 고	(4) 공용하는 방송국	(5) 주수		
	안테나설치대							
	급전선주							
⑩ 부 속설 비	시험안테나	(1) 종류		(2) 용량		(3) 개수		
	자동경보장치 또 는 자동감시장치	(4) 경보를 받거나 감시하는 장소						
		(5) 경보 또는 감시항목						
		자동제어장치(원 격제어장치 포함)	(6) 제어장소					
			(7) 제어항목					
⑪ 그 밖에 사항								
⑫ 신청인 제출 도면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표시도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배치도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4)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5) 안테나계 구성약도				(6) 송신안테나 지향특성도				
(7)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계통도								

작성방법

1. ①의 (1)란: TV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TV 음성다중방송) 등을 적습니다.
2. ①의 (2)란: 송신기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장치와 예비장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에 공사설계의 내용이 동일한 장치에 대하여 일괄(제조번호는 제외합니다)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①의 (3)란: 평균전력을 적습니다.
4. ①의 (4)란: 출력, 이득, 손실을 고려한 전력을 적습니다.
5. ①의 (11)란: 반송파 직접 수신중계방식만 적습니다.
6. ①의 (12)란: 주파수편이 역제장치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송신기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함께 적습니다.
7. ①의 (14)란·(15)란·(16)란·(20)란·(21)란·(22)란 및 ②의 (4)란·(5)란·(6)란: 허가신청 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신고 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8. ②란: 다른 방송국의 전파를 직접 수신하여 중계하는 경우에는 수신기에 관하여 적고, (주장치·예비장치)의 해당 사항에 ○표를 합니다.
9. ③의 (1)란부터 (7)란까지: 주장치와 예비장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③의 (3)란: 상대이득 또는 절대이득을 적습니다(지향성 안테나일 때에는 최대 지향방향의 이득)
11. ③의 (4)란·(5)란: 안테나 복사체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적습니다.
예) 지상고: 지상에서 안테나 중심부까지의 높이
해발고: 해면에서 안테나 중심까지의 높이
12. ③의 (6)란: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에는 지향성을 주는 방법을 적습니다.
13. ④란: 송신안테나계와 같이 적습니다.
14. ⑤란: 레코드 플레이어, 테이프 레코드, 비디오 레코드, 스튜디오 카메라, 필름 카메라, 필름 투사기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15. ⑥란: 제한증폭기, 조정증폭기, 전치증폭기, 카메라 제어장치, 동기신호 발생장치, 혼합증폭기, 안정증폭기, 스테레오 제너레이터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16. ⑦의 (5)란: 전원설비를 다른 방송국과 공용하는 경우 해당 방송국명 및 '공용'을 적습니다.
17. ⑧란: 라디얼스인 경우에는 접지선수·길이 및 깊이를, 심굴접지인 경우에는 면적·매수 및 깊이와 접지저항을 각각 적습니다.
18. ⑨란: 안테나설치대와 급전선주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19. ⑨의 (2)란: 구축물(건물)을 제외한 안테나 또는 급전선의 높이를 적습니다.
20. ⑨의 (3)란: 구축물(건물)을 포함한 안테나 또는 급전선의 높이를 적습니다. 예) 건물+안테나, 건물+급전선
21. ⑩의 (4)란·(5)란·(6)란·(7)란: 경보·감시 또는 제어하는 장소가 경보감시 또는 제어대상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2. ⑫란: 각 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속에 ○표를 합니다.
23. ⑫의 (1): 5만분의 1지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4. ⑫의 (2): 통신국건물·부속사·안테나 등의 개요를 적고, 안테나 부근의 인접무선국 및 전파장애 시설물을 표시합니다.
25. ⑫의 (3): 중계망의 구성과 방식을 적습니다.
26. ⑫의 (4): 각단의 용도, 진공관(반도체)의 명칭주파수 및 전원전압 등을 적습니다. 허가신청 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신고 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27. ⑫의 (5)
 - 안테나설치대, 안테나 공용장치 및 급전선 공용장치를 포함하고, 안테나 복사체의 형상 및 크기와 복수의 복사체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 복사체에 공급되는 전력비 및 전류의 위상을 함께 적습니다.
 - 안테나의 취부상황을 평면도(방위표시) 및 측면도로 작성합니다.
28. ⑫의 (6): 수평면 및 수직면의 지향 특성도를 각각 작성하고 1도 단위로 안테나 방사전력의 수직, 수평값을 제출합니다.